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9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출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공동브랜드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기준마련(안 제4조)
- 공동브랜드 위원회 심의 및 심의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마련(안 제7조)
-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사후관리·사용 중지·사용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부서협의

1) 협의기간 : 2022. 2. 17. ~ 2022. 2. 23. (7일간)

2)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3. 9. ~ 2022. 3. 23.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여유농”을 말한다.
3. “생산자 및 단체”란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단체,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4. “사용권”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위원회”란 남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 분과)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사용승인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로 하되, 가공업자의 경우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생산자 및 단체로 한정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GAP 인증 등)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산물을 재배한 생산자 및 단체

4.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품목연구회 또는 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6. 각 농협 선별장·선과장에서 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3.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
4.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 인증 등)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4.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 승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 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및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중지)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말소

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전광판 등) 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2.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
3.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
4. 교육 및 연수사업
5.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6.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7조(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농업기술과
입안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팀장 직위 · 성명 농업브랜드특화팀 변동균
	담당자 성명 · 전화 정채연 (행정 8423)

[별표 1]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1. 브랜드명 : 여유농

2. 상 징 어 : 정약용, 흙

3. 개발의도

- 1) 남양주시의 캐릭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담아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 을 모티브로 남양주시 농산물 이미지 부각
- 2) “정약용, 흙” 이라는 상징어를 부여하여 좋은 흙에서 건강하게 재배한 농산물 이미지를 강조함

4. 디자인설명 : 흥겹게 춤을 추는 춤사위를 형상화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캘리그래피와 접목시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

5. 브랜드 심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인	법인(단체)명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대표자 성명			성 별	남 , 여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생 산 관 계	품목(품종)			생산기간	20 . . ~20 . .
	농지(사업장) 소재지			출하기간	20 . . ~20 . .
				재배면적	ha
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생 산 량 (ton)		
브 랜 드 사 용 계 획	품 목	포장단위(kg)	포장재수	사용기간	주출하처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남양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남양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제5조 관련)

신 청 자		주 품 목	사 용 신 청 량 (매)	서 명·날 인
주 소	성 명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상품과 관련하여 내용물의 품질 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제8조 관련)

- 승인번호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지정품목 :

「남양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

승인번호	지정일자	품질인증을 받은 자			내 용		비고
		성 명	법인명 (생산자 단체)	주 소 (전화번호)	인증품목	승인기간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사용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인일시	법인(대표자)명	승인품목	연락처
변경 신청사유					
변경내역 (요지중심)	종전				
	변경				
신청인	법인(단체)명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대표자 성명			성 별	남 , 여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생 산 관 매 계 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20 . . ~20 . .
	농지(사업장) 소 재 지			출하기간	20 . . ~20 . .
	농 산 물 인증현황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재배면적	ha
브랜 드 사 용 계 획	품 목	포장단위(kg)	포장재수	사용기간	주출하처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남양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제9조 관련)

신 청 자		주 품 목	사 용 신 청 량 (매)	서 명·날 인
주 소	성 명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상품과 관련하여 내용물의 품질 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제13조와 관련)

승인번호		승인기간	-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		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업)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이사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2항에 따라 기 제작된 상표를 자진 폐기하였으며, 제13조3항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남양주시장 귀하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
과보고

1. 관련: 농업기술과-3630(2022. 3.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정 조례명 :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3. 3.(목) ~ 2022. 3. 23.(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정채연	농업기술과 전결 2022. 3. 23.	장	오형진
협조자				
시행	농업기술과-4940		접수	
우	1214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8423	팩스번호 031-590-2579	/ ene0827@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제5호 및 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10)

1. 농업기술과-2875(2022.02.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10)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여성아동과	복지국장	전결 2022. 2. 18.
권필순	장 이은경	이인애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4781 (2022. 2. 18.)	접수	농업기술과-2998 (2022. 2. 2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2동, 남양주시 청 복지국)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10			
정책명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농업기술과		
	담당자명	정채연	전화번호	031-590-84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기술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 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필순/031-590-4491) 농업기술과장 귀하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2-09)

농업기술과-2874(2022.2.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 (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인섭	청렴윤리팀 장	심현아	감사관	홍준기	전결 2022. 2. 18.
협조자						
시행	감사관-1944	(2022. 2. 18.)	접수	농업기술과-3004	(2022. 2. 2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2-남양주-09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농업기술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농촌지도사 정채연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2. 2. 18.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2년 2월 18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p>			
<p>농업기술과장 귀하</p>			

붙임5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회신(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 농업기술과-2871(2022. 2. 1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규제(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 25.]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끝.

